소무의도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(안) 의견 제시의 건

의안 번호	

제출연월일: 2026. 11. .
제 출 자: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

1. 제 안 이 유

본 대상지는 주민 참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,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추진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며, 같은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2. 주 요 내 용

가. 위 치 : 무의동 877번지 일원
나. 면 적 : 29,672.6㎡
다. 사업기간 : 2025년 ~ 2027년
라. 사업내용 :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 등
마. 사 업 비 : 3,300백만원 (市 3000백만원, 區 300백만원)
바. 기대효과 :
- 지역의 보행안전, 마을경관 개선
-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
- 지역주민들의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

3. 참 고 사 항

가. 참고자료
- 소무의도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(안) 요약서
- 주민공람, 주민설명회 의견,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의견서

나. 관계법령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제1항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제2항

■ 관계법령

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】

제8조(정비구역의 지정) ①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또는 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, 이하 "정비구역의 지정권자"라 한다)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 ·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(변경지정을 포함한다)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
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
④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.

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(이하 제9조, 제11조 및 제20조에서 "구청장등"이라 한다)는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 ·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.

제15조(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)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,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,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, 주민설명회,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97조, 제98조,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 · 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 · 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